

## 6. 2016년 미국 통관거부사례 분석

수출정보부

### 주요내용

▶ 2016년 한국 농식품의 미국 통관거부 사례는 총 148건

- 2016년 미국에서 통관이 거부된 한국식품은 총 148건으로 라벨 및 포장불합격으로 인한 거부건수가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성분 부적합 잔류농약 문제(58건), 서류미비(17건) 순이었다.

### 2016년 통관거부 사유별 거부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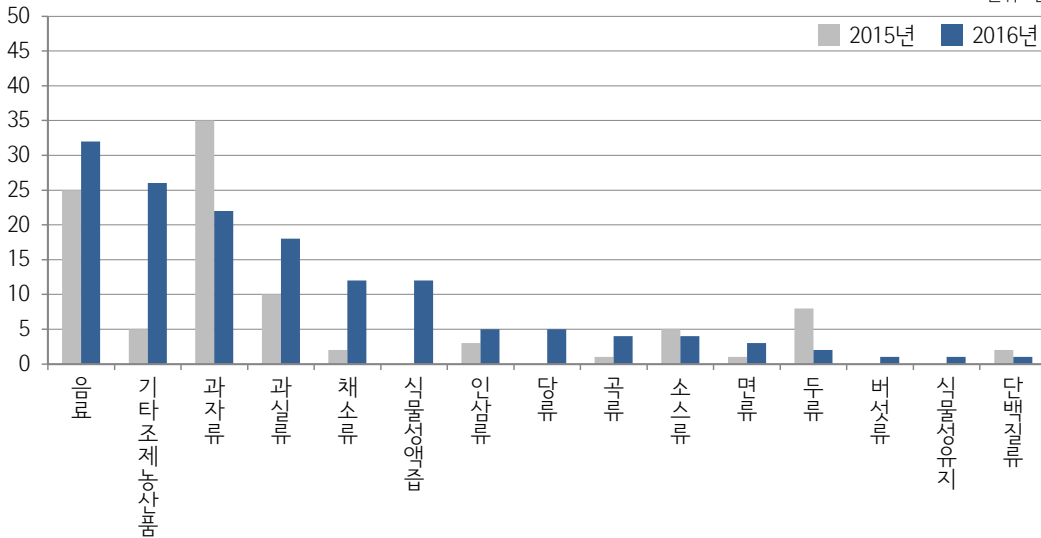
단위: 건

구분	라벨링/포장	성분 부적합 /잔류농약	위생	서류미비	기타
계	68	47	1	17	15

\* 자료: 미국 FDA(수산물 제외)

### 2015~2016년 품목별 통관거부 건수

단위: 건



\* 자료: 미국 FDA(수산물 제외)

▶ 신선농산물의 주요 통관거부 사유는 잔류농약 검출

- 신선농산물의 경우 18건의 통관거부사례가 발생되었으며 잔류농약 검출 주요 원인이었다. 식품안전 현대화법 시행 및 수입식품에 대한 오염검사를 강화하는 추세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신선농산물이 잔류농약허용기준치를 초과하거나 EPA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농약 사용으로 통관되지 못한 채 폐기처분 또는 압류조치를 받은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미국은 Zero Tolerance 제도를 통해 자국의 농업보호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자국에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에 대해서는 불검출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잔류기준이 없는 경우, 주정부에 따라 0.01 ~ 0.1ppm 적용

▶ **음료, 과자류 식품첨가물 사용시 주의 필요**

- 과자류의 경우 색소와 관련된 식품첨가물의 사용위반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표기사항 미비(라벨링)로 52건 적발되었다.
- 미국내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로 인공트랜스지방, 카페인등 FDA의 성분관리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FDA가 고시하는 GRAS\* 성분의 규정안의 식품첨가물 승인절차를 충분히 숙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란, 의도한 용도대로 사용했을 경우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성분(소금, 후추, 식초, 베이킹파우더, MSG 등)

▶ **서류미비로 인한 가공식품 통관거부 사례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

- 제품성분 및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통관에 필요한 제반서류가 완벽히 준비되지 않아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 한미FTA관련 원산지 검증작업 강화되고 있으므로 수입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산지증명서 등 수출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KATI 홈페이지에서 미국 농식품 통관문제사례 정보를 확인하세요!**

- aT수출정보부에서는 농수산식품 수출지원정보(KATI)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농식품 통관거부 동향 분석자료 뿐만 아니라 미국 식품현대화법(FSMA)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수출현장에서 겪는 비관세장벽의 해소를 위해 「비관세장벽 신고」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7. FDA 시설 재등록 변경사항 꼭 확인하세요!

LA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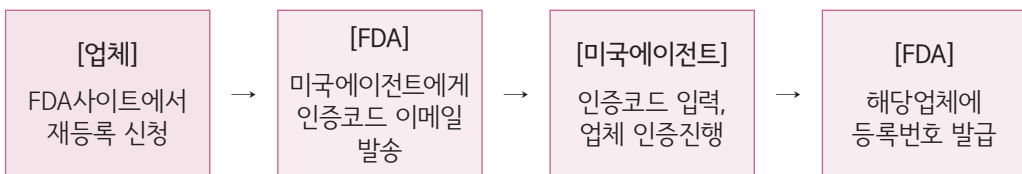
## 주요내용

## ▶ FDA 식품시설등록, 미국 수출의 필수 단계

- FDA의 식품시설등록은 잠재적 혹은 실질적 생체테러 위험, 식품매개질환 발생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FDA로부터 해당 식품시설의 자료를 활용,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식품시설에 신속히 통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 식품시설등록은 미국 내 시설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업체들의 인간 또는 동물이 소비하는 모든 식품(사료 포함)에 관련한 제조, 가공, 포장, 저장 시설 모두 의무등록사항이며 매 짝수 해마다 등록된 식품시설을 재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 \* 등록기간 : 짝수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등록대상 : 모든 해외 식품수출업체
- 등록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과 재등록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며 재등록을 진행하는 년도에는 ‘업데이트(update)’기능이 사라지도록 되어있다.
- 식품등록을 위해서는 FDA Industry Systems 내의 온라인어카운트(Online Account Administration-OAA)에 로그인한 후 ‘Food Facility Registration(FFR)’시스템을 눌러 재등록 ‘Biennial Registration Renewal-yyyy’을 선택한 후 진행하면 된다.

## ▶ FDA 시설 재등록 시스템(Food Facility Biennial Registration Renewal) 변경

- FDA는 보다 정확한 업체관리와 미국측 에이전트에게 해외업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존의 재등록 시스템 절차를 변경하였다.
- 2년에 한번 재등록 시, FDA측에서 미국 에이전트에게 이메일을 통해 인증코드를 부여하고 에이전트가 관리하는 해외 각 업체의 시설등록 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 인증코드로 인증을 부여해야 업체에게 등록번호가 재발급 된다.



- 따라서 미국 내 업체의 경우 등록 시에 담당자 e-mail주소를 반드시 적어야 하며 해외업체의 경우 미국 에이전트의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 2016년 FDA 시설 재등록시기에 미국쪽의 에이전트 컨펌을 진행하지 못해 수출에 차질을 빚거나, FDA측의 시스템 문제로 인해 등록번호가 누락 되는 등의 문제로 연초 미국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등록 절차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

\* 자료 : FDA 식품등록관련 홈페이지 및 FDA 식품시설등록 변화진행관련 발표자료

## 시사점

- 미국 식품시설등록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은 업체들도 많아 미국의 식품시설등록 및 재등록에 대해 변경사항 및 기준에 등록된 정보에 틀린 점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 미국 내 에이전트(미국 내 담당자 연락처) 없이는 등록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시에 미국 수입자, 브로커, aT 해외지사 등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수출입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